

아시아 시장에 대한 면책조항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상의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 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 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 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 그룹은 어떠한 제 3 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증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 그룹 및 “芝商所”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 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 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Dow Jones 는 Dow Jones Company,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문에서 규정 및 상품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NYMEX 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CME 와 CBOT 및 NYMEX 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 (공인시장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자동매매서비스)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 25 호 금융상품거래법(1948 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CME 그룹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 및 호주에서 각각 자본시장법 제 9 조 5 항 및 2001 년 기업법(C)와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전문투자자”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

Copyright © 2019 CME Group and 芝商所. All rights reserved.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

거래소	CME, CBOT, NYMEX, COMEX
주제	관련 포지션 교환 (EFRP)
참조 규정	규정 538
권고일	2019년 3월 5일
권고 번호	CME 그룹 RA1901-5
발효일	2019년 3월 19일

관련 CFTC 규정 검토 기간을 조건부로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거래일을 기하여 발효되는 본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은 2018년 11월 15일에 발행된 CME 그룹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 RA1813-5를 대체합니다. 본 공지문은 다음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 EFRP 실행을 중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제 3자의 전산 시스템에 관련한 요건을 Q&A 5번에 추가
- EFRP 가격 책정에 대해 추가적인 규정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11번 질문의 답변 수정
- EFRP의 청산소(CME Clearing)에의 제출에 관한 22번 질문의 답변 수정

이 권고 공지문에 그 밖의 중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일체 상품의 조건부(transitory) EFRP 실행 금지 조항의 존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4일 이전에는 허용되었던 CME 외환 상품, NYMEX 에너지 상품, COMEX 및 NYMEX 금속 상품의 조건부 EFRP의 실행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규정 538에 정의된 것처럼, 조건부 EFRP는 특정 EFRP의 실행이 다른 EFRP의 실행이나 당사자들 간의 관련 포지션의 거래 실행에 달려 있고, 해당 거래가 관련 포지션 거래에 있어 시장 리스크의 발생 없이 관련 포지션의 상쇄로 이어지는 EFRP입니다. 본 FAQ의 질문 14-17번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해당 거래가 조건부 EFRP인지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해당 거래의 정당성은 해당 거래가 거래의 맥락에서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 독립적인 거래로서 무결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토대로 평가될 것입니다.

본 공지문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NYMEX & COMEX 상품

Tom Dixon, Manager, 212.299.2901
Ryne Toscano, Senior Director, 212.299.2879

CME & CBOT 상품

Michael Joubert, Manager, 312.341.7714
William Lange, Director, 312.341.7757
Chris Reinhardt, Executive Director, 312.435.3665

본 권고 공지문과 관련한 미디어 문의는 CME 그룹의 기업홍보팀 (312.930.3434 또는 news@cmegroup.com)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규정 538 본문 - (“관련 포지션 교환”)

관련 포지션 교환(Exchange for Related Position, “EFRP”) 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거래소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을 매매하고 해당 시장 반대방향에서 동일한 수량의 거래소 계약의 기초 자산에 상응하는 현물 상품, 부산물, 관련 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이다.

다음 유형의 EFRP 거래는 이 규정의 요건에 따라 본 거래소에서 중앙통제하는 시장 이외에서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실물 선물 교환) – 거래소 선물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실물 거래 혹은 실물 선도 계약의 동시 실행.

EFR (Exchange of Futures for Risk, 리스크 선물 교환) – 거래소 선물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장외 스왑 혹은 기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동시 실행.

EOO (Exchange of Option for Option, 옵션 대 옵션 교환) – 거래소 옵션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장외 옵션계약의 동시 실행.

본 규정의 목적상, EFP, EFR, EOO 모두를 EFRP 거래로 총칭한다.

538.A. EFRP 거래 당사자

EFRP의 당사자 중 일방은 반드시 거래소 계약의 매수자이자 관련 포지션의 매도자(또는 그에 관련된 익스포저의 매도 포지션 보유자)여야 한다. 타방 EFRP 당사자는 거래소 계약의 매도자이자 관련 포지션의 매수자(또는 그에 관련된 시장 익스포저의 매수포지션 보유자)여야 한다. 거래소 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관련 포지션은 반드시 동일한 실질 소유주의 계좌를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제 3 자든 자기 매매로서 고객을 위해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를 중개할 수 있다. 그러한 제 3 자는 EFRP의 일환으로 해당 거래소 계약을 수령한 고객에게 해당 관련 포지션이 그대로 전달(pass through)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섹션 K에 의거하여 실행된 외환 EFP를 즉각 반대매매 (immediately offsetting) 하는 것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섹션 K에 의거하여 CTA, 계좌 관리자 또는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에 의해 실행되는 EFP 즉각 반대매매 (immediately offsetting) 실행과 관련하여, 개시(initiating)하고 상쇄(offsetting)하는 현물 거래 구간들은 EFRP의 일환으로 해당 거래소 계약을 수령한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거래의 선물 구간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기초 고객은 반드시 상쇄하는 현물 거래 구간의 반대 매매에 수반된 손익을 (있을 경우) 수령하여야 한다.

EFR 혹은 EOO 거래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거래의 관련 포지션 부분에 참여할 자격 요건에 관한 모든 CFTC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38.B.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계좌들

EFRP 거래에서 상대 계좌는 반드시 (a)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각기 다른 실소유주의 계좌이거나, (b) 공통의 실소유주가 보유한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개별 법인의 계좌, 또는 (c)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동일한 법인의 계좌(계좌 통제권자가 개별적 영업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이어야 한다.

공통의 실소유주가 보유한 계좌간의 EFRP 거래 시, 해당 거래의 당사자들은 해당 계좌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지니고 있고 해당 거래가 각 당사자에게 경제적 실질성이 있는 거래였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38.C. 관련 포지션

EFRP의 관련 포지션 요소는 반드시 본 거래소 계약의 기초 현물 상품, 부산물, 관련된 상품, 혹은 본 거래소 계약의 기초 상품과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상관 관계를 지닌 상품에 대한 장외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EFRP의 관련 포지션 요소로 선물계약이나 선물계약에 대한 옵션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각 EFRP는 당사자 간에 이뤄진 기초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 혹은 해당 관련 포지션 거래에 적용되는 시장 관행에 따른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필요로 한다.

EFRP의 실행이 해당 관련 포지션 거래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시장 리스크 발생 없이 관련 포지션의 상쇄를 초래하는 형태로 다른 EFRP 혹은 관련 포지션의 거래를 조건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EFRP 거래가 실질적 거래가 아님을 아는 일체의 당사자가 그러한 거래 실행에 협력하는 것은 본 규정의 위반이다.

538.D. 저장 가능한 비금융 상품의 재고 금융과 연계된 EFP

저장 가능한 농산물, 에너지 또는 금속 상품에 재고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EFP 거래의 실행을 통해 해당 상품을 매수하고 동일한 수량의 선물 계약을 거래 상대방에게 매도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미래의 지정된 기간에 원래의 EFP를 뒤집는 효과가 있는 EFP를 실행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무는 아님)를 부여할 수 있다.

538.E. 등가 수량

EFRP를 구성하는 '관련 포지션'의 수량은 반드시 EFRP를 구성하는 거래소 계약의 수량에 대략적으로 상응하는 수량이어야 한다. EFRP의 거래소 계약 부분과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 간의 적절한 헤지 비율이 등가성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538.F. 가격 및 가격 단위

EFRP 거래의 거래소 부분은 반드시 본 거래소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에 명시된 해당 선물 가격 단위 또는 옵션 프리미엄 가격 단위에 준하여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EFRP는 통상적으로 합당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정당한 상업적 행위의 결과 이외에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자금의 이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서는 안된다.

538.G. 거래소 계약 종료 이후 EFRP

특정 거래소 계약의 EFRP 거래는 각 거래소 계약에 적용되는 해당 상품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 종료 후 지정된 일정 기간 동안 실행할 수 있다. 그러한 거래는 오로지 거래소 포지션을 청산하는 목적으로만 실행할 수 있다.

538.H. 기록 보관

EFRP 거래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거래소 계약 및 관련 포지션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하여야 할 기록에는 주문 티켓, 관련 시장 관행에 따라 생성되는 기록, 당사자들 간의 결제 내역이 반영된 기록, 소유권 이전(해당되는 경우) 및 CFTC 규정 1.35에 따라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체의 기록이 포함된다. EFRP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반드시 해당 거래의 중개 활동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 거래소의 요청 시 EFRP 거래 관련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를 보유한 청산 회원은 요청된 자사 고객의 기록을 적시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538.I. 청산소에 제출

각 EFRP 거래는 본 거래소와 청산소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지정된 형식에 따라 청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산소에 제출되는 기록은 반드시 정확한 EFRP 거래 유형,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 조건에 동의한 정확한 일시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청산소에 제출된 EFRP 거래는 해당 거래가 청산되고, 첫번째 정산차금의 결제 및 증거금이 확인될 때까지, 본 청산소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38.J. 일일 대량 거래자 포지션과 함께 보고해야 하는 EFRP 거래량

규정 561에 따라 일일 대량 거래자 포지션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각 청산 회원, 옴니버스 계좌 및 해외 브로커는 각 보고 대상 계좌별 보고대상 상품의 EFRP 매수 및 매도 수량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반드시 본 거래소에 제출하는 일일 대량 거래자 보고서(daily Large Trader report)에 포함되어야 한다.

538.K. 즉시 상쇄(Immediately Offsetting) 외화 선물 EFP

거래 당사자들이 현물 거래를 즉시 상쇄하는 통화선물 EFP는 허용되며 본 거래소는 해당 거래의 은행/외환 딜러 당사자가 거래 확인서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래 확인서는 은행/외환 딜러가 통화 거래를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유형이어야 하며 거래 주체인 상대방의 신원을 이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EFP 거래가 은행/외환 딜러와 CTA, 계좌 관리자 또는 제3자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자(상품 풀이나 펀드와 같은) 간에 이뤄지는 경우, 현물 거래 확인서에 최소한 제 3자가 계좌를 보유한 청산 회원의 명칭과 제 3자의 계좌번호(또는 기타 계좌 식별 명칭)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거래들은 오로지 통화선물의 EFP 거래에서만 허용되며, 다른 자산 종목 또는 통화선물 EFR이나 EOO 거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 538 관련 FAQ 관련 포지션의 교환

Q1: EFRP 거래란 무엇인가요?

A1: EFRP는 Exchange for Related Position(관련 포지션 교환)의 약어이며, EFRP는 선물 및 선물옵션이 본 거래소에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EFRP 거래는 거래소 선물 또는 거래소 선물옵션을 거래소 외부에서 거래함과 동시에 시장의 반대방향으로 상응하는 수량의 거래소 계약의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현물 상품, 부산물, 관련 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EFRP 거래와 "Ex-Pit"(장외) 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Ex-Pit 거래"라 함은 광범위하게 거래소 규정에 의해 본 거래소가 중앙관리하는 시장 외부에서의 체결이 허용된 거래를 말합니다. 허용되는 장외(Ex-Pit)거래에는 EFRP, 대량매매 및 계좌 이전 거래가 포함됩니다. EFRP는 규정 538, 대량 매매는 규정 526, 계좌 이전 거래는 규정 853에서 다룹니다.

Q3: CME 그룹 거래소가 허용하는 EFRP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3: 규정 538, 본 권고 공지문에 담긴 지침 및 해당 CFTC 규정에 의거하여 본 거래소가 중앙 관리하는 시장 외부에서 허용되는 EFRP(관련 포지션 교환)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실물 선물 교환) – 거래소 선물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실물 거래 또는 실물선도 계약의 동시 실행.

EFR (Exchange of Futures for Risk, 리스크 선물 교환) – 거래소 선물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장외 스왑이나 기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동시 실행.

EOO (Exchange of Option for Option, 옵션 대 옵션 교환) – 거래소 옵션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장외 옵션의 동시 실행. 장외옵션을 제외한 그 어떤 상품도 EOO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적격하지 않습니다.

선물 계약이나 선물옵션 계약이 EFRP의 관련 포지션의 구성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가 선물 거래, 연방 규정 하에 스왑으로 정의되지 않은 선도 계약, ETF (상장지수펀드), 또는 ETN (상장지수채권)인 경우, 해당 거래는 EFP 거래 유형으로 제출하여 청산해야 합니다.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가 연방 규정 하에 스왑으로 정의되거나 다른 장외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해당 거래는 적용되는 바에 따라 반드시 EFR이나 EOO 거래 유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 Part 43, 45에 규정된 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CFTC/SEC 상품 정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스왑 및 선도계약 제외 범위를 정의한 2012년 8월 13일의 미국 연방공보 (Federal Register release) 77 FR 48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M(공인시장운영자) 또는 SEF(스왑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스왑은 규정 538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EFR이나 EOO 거래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제외 조항은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 거래하고 DCO에서 청산만 하는 스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스왑은 기초자산이 되는 CME 그룹 거래소 상품과 합리적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4: 모든 CME 그룹 거래소 선물 및 옵션 계약에 대해 EFRP를 실행할 수 있나요?

A4: 일체의 CME 그룹 선물 및 선물 옵션 계약을 EFRP 거래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거래는 규정 538과 관련된 모든 권고 공지문은 물론, 해당되는 모든 CFTC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술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CBOT Soybean Crush Spread Option은 CME ClearPort나 CME Direct를 통해 CME 청산소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EFRP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Q5: EFRP를 전산 시스템 상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A5: 매수 및 매도 주문의 전산상 수락 또는 전산상 매칭이 허용되는, 다수의 참가자가 접근 가능한 시스템 혹은 시설에서의 EFRP 실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단수 혹은 복수의 참가자로부터 EFRP 호가를 쌍방간에 요청하고 EFRP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거래하기 위하여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에게 보여지는 EFRP 시장을 전산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제 3자가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게시되는 예시적(indicative) 시장에 근거하여 당사자들 간에 거래되는 EFRP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당되는 경우 브로커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양방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만 거래될 수 있습니다.

Q6: EFRP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나요?

A6: EFRP는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산소에 제출된 EFRP 거래는 해당 거래가 청산되고, 첫 번째 정산차금 결제 및 증거금이 확인될 때까지, 본 청산소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7: 만기되는 계약의 거래가 종료된 후에 EFRP 거래를 실행할 수 있나요?

A7: 일부 거래소 계약의 EFRP 거래는 거래소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그리고 각 거래소 계약에 적용되는 상품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 종료 이후 지정된 기간 동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 규정집의 해당 상품의 장(Chapter)에 그러한 거래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허용될 경우, 거래 종료 이후 거래 실행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할 것입니다.

Q8: EFRP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제약이 있나요?

A8: EFP 거래 – EFP 거래 참가 자격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EFR 및 EOO 거래 – EFR 및 EOO 거래 참가자는 반드시 EFR 또는 EOO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 거래 자격에 적용되는 CFTC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참가자는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본인의 거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는 CFTC 규정 제 32조 상품 옵션 거래 및 제 35조 농산물 상품 스왑을 포함하여 관련 포지션에 적용되는 모든 자격 기준을 영두에 두어야 합니다.

Q9: 연계된 계좌들 간에 EFRP 를 실행해도 되나요?

A9: EFRP 실행에 개입되는 상대 계좌들은 반드시:

- a) 실소유주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계좌, 또는
- b) 공통의 실소유주가 보유한 개별 법인의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계좌, 또는
- c)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동일한 법인의 계좌(계좌 통제권자가 개별적 영업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여야 합니다.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에는 동일한 사람이나 기관이 소유하는 계좌, 모회사 및 모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의 계좌, 그리고 동일한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들의 계좌가 포함됩니다. 공통의 실소유주는 더 포괄적이며,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뿐 아니라, 100% 미만 지분의 공통의 실소유주까지 포함됩니다.

동일한 법인이나 공통의 실소유주를 수반하는 EFRP 거래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각 계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통제권은 물론, 해당 EFRP 거래가 당사자에게 경제적 실질성이 있는 거래였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0: 여러 당사자가 개입된 EFRP 거래는 허용되나요?

A10: 일반적으로 EFRP 에는 양방의 당사자만 허용됩니다. EFRP 의 당사자 중 일방은 반드시 거래소 계약의 매수자이자 관련 포지션의 매도자(또는 그에 관련된 익스포저의 매도 포지션 보유자) 여야 합니다. 타방의 EFRP 당사자는 거래소 계약의 매도자이자 관련 포지션의 매수자(또는 그에 관련된 익스포저의 매수 포지션 보유자) 여야 합니다. 거래소 계약과 그에 상응하는 관련 포지션은 반드시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를 위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 3 자든 자기매매로서 고객을 위해 EFRP 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제 3 자는 해당 거래소 계약을 EFRP 의 일부분으로 받은 고객에게 해당 관련 포지션이 그대로 전달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섹션 K에 의거하여 CTA, 계좌 관리자나 기타 제 3자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자에 의해 실행되는 즉시 상쇄(Immediately Offsetting) 외환 선물 EFP와 관련하여, 개시(initiating)하고 상쇄(offsetting)하는 현물 거래 구간은 EFRP의 일환으로 해당 거래소 계약을 수령한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의 선물 구간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기초 고객은 반드시 상쇄되는 현물 거래 구간의 상쇄로 인한 손익을 (있을 경우에 한해) 수령하여야 합니다.

Q11: EFRP 거래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격 제한이 있나요?

A11: EFRP는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거래소 계약의 상품 장(Chapter)에 나오는 규정에 명시된 해당 선물의 최소 가격 단위 또는 옵션 프리미엄의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규정 524에 의거하여 정산가나 기준가, 또는 정산가나 기준가 이상/이하의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가격 책정이 허용된 상품에 대한 EFP와 EFR 거래의 선물 구간은 TAS나 TAM 가격 책정이 가능합니다. 당월물(Spot month) 구리 EFP 및 EFR의 선물 구간은 정산가, 즉 TAS 플랫폼(flat) 가격에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특정 상품, 계약월 및 허용되는 최소 가격 단위의 상세 정보는 각 거래소 규정집 5장 말미에 나오는 "해석 및 특별 공지에 제시된 TAS 표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에 체결된 EFRP는 그러한 가격 책정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시장규제부에 의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EFRP의 선물 또는 선물옵션 구간과 현물 또는 장외파생상품 구성 요소 사이에 손익을 할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세의 목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황을 가장하여 재정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기타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FRP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에 책정할 수 없습니다. .

Q12: EFRP는 평균 가격에 책정해도 되나요?

A12: 예. 평균 가격 책정에 지정된 EFRP 거래는 반드시 규정 553 ("평균가격체계") 및 규정 538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Q13: EFRP 거래의 가격과 수량은 공시되나요?

A13: EFRP 거래의 거래소 구간 가격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EFRP 거래량은 매일 상품별로 CME 그룹 웹사이트에 공시됩니다.

EFR이나 EOO 거래의 당사자들은 관련 포지션 거래의 실행과 관련한 스왑 보고 요건에 대하여 CFTC 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Q14: CME 그룹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상품에서 조건부(transitory) EFRP 거래가 허용되나요?

A14: 아니요.

조건부 EFRP는 특정 EFRP의 체결이 당사자들간의 다른 EFRP 혹은 관련 포지션 거래 체결에 달려 있고 해당 거래가 관련 포지션 거래에 있어서 시장 리스크의 발생 없이 관련 포지션의 상쇄로 이어지는 EFRP입니다.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해당 거래가 조건부 EFRP 인지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해당 거래의 정당성은 해당 거래가 거래의 맥락에서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 독립적인 거래로서 무결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토대로 평가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등가인 선물 상품이 CME 그룹 거래소와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관련 포지션 부분이 서로 상계되고 시장 리스크에 예측되지 않는 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반대편 EFRP의 조건적 거래는 해당 CME 그룹 거래소에서 금지된 조건부 EFRP로 간주될 것입니다.

Q15: EFR을 통해 스왑을 결제하도록 협의할 수 있나요?

A15: 스왑 결제 가치(floating price)의 결정이 거래의 맥락에서 중대한 수준의 시장 리스크에 의해 결정되는 한, 스왑 거래 당사자들은 EFR을 통해 스왑을 결제하기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EFR을 통해 미래의 특정일에 미래의 정산가 또는 미리 지정한 기간 중의 평균 정산가에 스왑을 결제하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Q16: EFRP 거래의 거래소 구성 부분의 여러 구간을 통합하거나 관련 포지션 구성 부분의 여러 구간을 통합해도 되나요?

A16: 섹션 C와 본 권고 공지문 질문 13에 정의된 금지된 조건부 EFRP가 아닌 경우, EFRP는 복수의 거래소 구성 요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들이 관련 포지션 거래의 맥락에서 중대한 시장 리스크에 처함 없이 상쇄되는 경우, 복수의 거래소 구성 요소가 포함된 EFRP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가 상쇄되지 않고 중대한 시장 리스크에 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거래소 구성 요소가 포함된 EFRP가 허용됩니다.

관련 포지션 구성 부분의 순 익스포저가 교환된 선물의 수량과 대략 등가이거나, EOO의 경우 장외 옵션 구성 부분의 순 델타 조정 수량이 거래소 상장 옵션의 델타 조정 수량과 대략 등가인 경우, EFRP에 복수의 관련 포지션 구성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17: 저장 가능한 비금융 상품의 재고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 EFP를 활용할 수 있나요?

A17: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저장 가능한 농산물, 금속 및 에너지 상품에 재고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EFP 거래를 입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저장 가능한 비금융 상품을 위해 재고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EFP 거래의 실행을 통해 해당 상품을 매수하고 상응하는 수량의 선물 계약을 거래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해당 거래 상대방에게 지정된 미래의 기간 중 원래의 EFP를 뒤집는 효과가 있는 EFP를 실행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무는 아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18: EFRP의 관련 포지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8: EFRP를 구성하는 관련 포지션은 본 거래소 계약의 기초 상품, 부산물, 관련 상품, 또는 상응하는 거래소 상품과 합리적인 수준의 상관관계를 지닌 장외 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선물계약이나 선물계약 옵션이 EFRP의 관련 포지션의 구성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 특성 및/또는 관련 포지션의 만기가 거래소의 기초 계약과 다른 경우, EFRP 당사자들은 상품간의 상관관계 및 선물계약을 해당 관련 포지션과 등치하는데 사용한 방법론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관련 포지션 거래는 반드시 상응하는 본 거래소 계약의 수량, 가치나 리스크 노출 측면에서 비교 가능하여야 합니다.

각 EFRP는 당사자 간에 이뤄진 현물 상품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 혹은 해당 관련 포지션 거래에 적용되는 시장 관행에 따른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가 실물 거래, 연방 규정 하에 스왑으로 정의되지 않은 선도 계약, ETF(상장지수펀드) 또는 ETN(상장지수채권)인 거래는 EFP 거래 유형으로 제출하여 청산해야 합니다.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가 연방 규정 하에 스왑으로 정의되거나, 기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해당 거래는 반드시 적용되는 바에 따라 EFR이나 EOO 거래 유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 Part 43, 45에 규정된 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CFTC/SEC 상품 정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스왑 및 선도계약 제외 범위를 정의한 2012년 8월 13일의 미국 연방공보(Federal Register) 77 FR 48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EFRP의 관련 포지션 상품에는 다음의 상품 그룹이 포함됩니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외환 계약: 외환 EFRP 거래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현물, 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NDF"), 스왑 및 스왑선, 이종통화 베이스 스왑, 장외 FX 옵션, 비인도옵션(NDO), 통화 바스킷,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금리 계약: 금리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국채, 정부 기관 채권, 투자등급 회사채, 머니마켓 상품, 금리 스왑 및 스왑선, 선도금리계약(FRA), CMO를 포함한 담보부 모기지 채권, 장외 금리옵션,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주가지수 계약: 주가지수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주식 바스킷이 포함됩니다. 단 해당 바스킷은 주가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야 하며, 나아가 기초 주가지수 비중의 50% 이상을 대표하거나 기초 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5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당 바스킷의 명목 가치는 반드시 상응하는 거래소 계약 가치와 거의 동일한 가치여야 합니다. 기타 허용되는 상품에는 주가지수 스왑 및 스왑선, 장외 주가지수 옵션,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농산물 계약: 농산물 상품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선물계약의 기초 상품, 부산물, 혹은 교환되는 선물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관련 상품, 실물인수 선도(physical forward), 현금 결제 선도(cash-settled forward), 농산물 상품 스왑 또는 스왑선, 장외 농산물 옵션,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상품 지수 계약: 상품 지수 (예, S&P GSCI, Bloomberg 상품 지수)를 토대로 한 거래소 계약을 포함하는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해당 상품 지수 스왑이나 스왑선,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계약: 에너지 상품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선물계약의 기초 상품, 부산물, 혹은 교환되는 선물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관련 상품, 실물인수 선도(physical forward), 현금 결제 선도계약(cash-settled forward), 에너지 상품 스왑 또는 스왑선, 장외 에너지 옵션,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금속 계약: 금속 상품 EFRP의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로 허용되는 상품에는 관련 현물 거래, 실물인수 선도(physical forward), 현금 결제 선도 계약(cash-settled forward), 스왑 및 스왑선, 장외 금속 옵션, ETF 및 ETN이 포함됩니다.

관련 포지션 상품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의는 본 권고 공지문에 기재된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Q19: EFRP의 기록 보관 요건은 무엇인가요?

A19: EFRP의 당사자들은 CFTC 규정 1.35에 의해 보관 의무가 명시된 일체의 기록을 포함한 본 거래소 계약 및 해당 관련 포지션 거래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요청 시, 시장규제부에 반드시 그러한 기록을 적시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A. 모든 주문 티켓, 거래 기록부(trade blotter),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전화 녹음 또는 해당 주문 제출, 협상, 체결 및/또는 EFRP 확인서와 관련한 기타 기록.
- B. 해당 EFRP의 현물 또는 파생상품 구성 요소에 대한 모든 현물 확인서 및 서명된 계약서. 해당 문서는 모든 거래 조건과 거래상대방의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C. EFP의 경우, 결제를 증빙하는 제 3자의 지급 증명서와 해당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선도 계약이 포함된 EFP의 경우, 요청 당시 선도 계약이 결제되었을 경우 상기 정보가 요청될 수 있음. EFR과 EOO의 경우, 그에 해당되는 바에 따라, 당사자 간의 결제를 증빙하는 지급 증명서.
- D. 해당 EFRP의 거래확인이 반영된 선물 계좌 거래내역서.
- E. 현물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기록이 반영된 해당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 기록.

EFRP 거래를 중개하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당 거래의 중개 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Q20: 시장규제부가 EFRP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시, 그러한 기록을 제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20: 요청 시, EFRP의 관련 포지션 문서는 반드시 요청된 형식과 형태로 적시에 시장규제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계좌를 보유한 청산 회원은 관련 EFRP 기록을 자사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하여 시장 규제 부서에 제출할 의무를 지닙니다.

규정 418 (“거래소 관할 동의”)에 의거하여, 본 거래소 규정에 따라 거래를 개시 또는 체결하거나 그러한 거래의 체결의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본 거래소의 법적 관할에 예속되며 시장규제부는 관련 기록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기록을 완전하거나,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 432.L. ("일반 위반")에 의거하여 제소 여부 판단을 위해 상당근거위원회(Probable Cause Committee)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Q21: EFRP 로 실행된 거래는 고객 계좌 거래 내역서에 반드시 EFRP 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A21: EFRP 거래는 거래 내역서에 명확하게 EFRP 거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거래를 "Ex-Pit"나 "ClearPort" 거래로 표시하는 것은 그러한 용어가 EFRP 이외의 거래 유형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22: EFRP 는 청산소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A22: EFRP 는 반드시 CME Direct 나 CME ClearPort 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CME Direct 나 CME ClearPort 에 대한 액세스를 얻는 다양한 등록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megroup.com/trading/cme-direct/registration.html#newFirmUserRegistration>

<http://www.cmegroup.com/clearport/registration.html>

CME 및 CBOT 상품의 EFRP

EFRP 는 CME Direct 및 CME ClearPort 를 통해 각 영업일 오후 6 시 CT ~ 오후 5:45 CT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CME Direct 및 CME ClearPort 는 각 영업일 오후 5:45 CT ~ 오후 6 시 CT 사이 및 주말에는 CME 및 CBOT EFRP 의 입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NYMEX 및 COMEX 상품의 EFRP

EFRP 는 CME Direct 및 CME ClearPort 를 통해 각 영업일의 오후 5:00 CT/6:00 동부표준시("ET") ~ 오후 4:00 CT/오후 5:00 ET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CME Direct 및 CME ClearPort 는 각 영업일의 오후 4 시 CT/오후 5 시 ET ~ 오후 5 시 CT/오후 6 시 ET 사이 및 주말에는 NYMEX 및 COMEX EFRP 의 입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FRP 는 FacDesk@cmegroup.com 에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CME ClearPort Facilitation Desk/Global Command Center 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Facilitation Desk** 가 해당 거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반드시 **CME Account Manager** 에 등록되고 신용한도 및 상품승인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Facilitation Desk 는 금요일 오후 4:30 CT/오후 5:30 ET ~ 일요일 오후 5:00 CT/오후 6:00 ET 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계정 등록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Enterprise Application & Systems Entitlements (EASE)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312.456.1560 (미국), +44 20 3379 3802 (유럽), +65 6593 5536 (아시아).

거래 제출에 문제가 있으시면 CME ClearPort Facilitation Desk/Global Command Center 에 연락하십시오. +1 800 438 8616 (미국), +44 20 7623 4747 (유럽), +65 6532 5010 (아시아).

Q23: EFRP 실행 후 얼마나 빨리 거래 내용을 청산소에 제출해야 하나요?

A23: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EFRP 거래는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 거래소에 제출하되, 해당 EFRP가 실행된 영업일 종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EFRP의 거래 조건은 해당 거래소 계약 및 관련 포지션 구성 요소의 가격과 수량이 EFRP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시점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TAS 또는 TAM 거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EFP 및 EFR의 경우, 거래의 실행 시간은 EFP 또는 EFR 당사자가 수량과 가격 (TAS 또는 TAM 플랫폼 또는 정산가나 기준가 이상/이하의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정한 가격)을 합의한 시점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인도 시점까지 실제 인도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가격 책정 시점에 EFRP를 보고하는 대신 실제 인도 수량이 결정된 후 정해진 보고 시한 이내에 해당 거래를 본 청산소에 제출하기로 문서 상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상 협의가 없으면 가격 결정 시점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송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EFRP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거래소 규정집에 나오는 관련 상품 장(Chapter)에 명시된 기초 선물 계약의 만료 후에 EFRP 거래의 허용된 제출 시한을 넘겨 청산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Q24: EFRP의 체결 일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24: 거래 체결 일시는 반드시 각 EFRP 거래 별로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체결 일시는 질문 22에 설명된 것처럼, 해당 거래 조건이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일시입니다.

EFRP 체결 시간은 반드시 CME Direct 나 CME ClearPort 에 EFRP를 입력하는 당사자(들)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25: 보고대상기관의 일일 대형 거래자 포지션 보고(daily Large Trader report) 파일에는 어떤 EFRP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A25: 회사의 일일 대형 거래자 포지션 파일에는 각 보고 대상 계좌별 보고 대상 상품의 EFRP 매수, 매도 거래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26: 고객을 대신하여 EFRP를 체결하거나 청산하는 회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26: 고객을 대신하여 EFRP를 체결하거나 청산하는 회사는 EFRP를 실행하는 자사 고객에게 거래소의 EFRP 요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닙니다. 시장규제부의 요청 시, EFRP를 체결한 계좌를 보유한 회사는 자사 고객의 EFRP 거래 기록을 적시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입수하여 제출할 책임을 지닙니다.

청산 회원이 고객에 의한 거래가 진실되지 않은 EFRP의 실행임을 실제로 또는 사실상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산 회원은 규정 538.C를 위반하게 됩니다.

Q27: 즉시 상쇄 외환 선물 EFP(Immediately Offsetting EFP)는 외환 선물의 조건부 EFRP 로 금지되나요?

A27: 아니요. 규정 538.K.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즉시 상쇄 외환 EFP 는 조건부 EFRP 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상쇄되는 실물 거래가 전혀 EFP 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즉시 상쇄 외환 EFP 의 선물 구간이 청산에 수락되지 않으면 해당 선물 거래는 원천 무효이며 거래 상대방들에게는 실물 거래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 538.K.는 실물 거래 및 EFP 거래가 즉각 실행되어 실물거래의 상쇄로 이어지고 따라서 조건부 EFRP 로 금지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